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철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 백철현 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 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범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 또한,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2014.10.27.)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월정수당을 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원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매월 월정수당 166만 8천원을 171만 8천원으로 정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 성주군의회 의원의 여비 현실화(안 별표 1, 별표 2)

- 성주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중 숙박비 지급 범위를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2018년 당초 예산반영

다. 기 타

1) 2015년~2018년도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금액 통보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1(2014.10.27.)]

2) 조례안예고 : 의견 없음〔2017.11. 9~11.13.(5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범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하므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성주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성주군의회의원 의정비 심의결과 (2014.10.27)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맞게 월정수당을 정하고, 성주군의회 의원 여비를「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범위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본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매월 월정수당 166만 8천원을 171만 8천원으로 정하였으며,
- 안 별표 1, 별표 2에서 성주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중 숙박비 지급 범위를 현행「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성주군의회 의원의 여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조례 제·개정을 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한 언론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로 명시하여 의정활동비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성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관련규정 및 경상북도 의정비 결정 지침에 맞게 월정수당을 정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 여비를 현실화 한 것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